「신문 대상 웰라움 라시엘」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문의 : 1600-2380

※ '신문 대상 웰라움 라시엘' 견본주택 운영사항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 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만 견본주택 방문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접수시에는 자격입증 서류 및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청약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가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자',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087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29층 5개동 총 375세대
■ **공급 대상**

(단위 : ㎡, 세대)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84.8659A	84A	84.8659	25.3215	110.1874	61.0569	171.2443	283
84.8215B	84B	84.8215	26.3958	111.2173	61.0249	172.2422	86
135.2181	135	135.2181	44.8465	180.0646	97.2829	277.3475	2
147.5507	147	147.5507	49.1348	196.6855	106.1556	302.8411	4
	합계						**375**

※ 본 안내문에 표기된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단위 : 세대, ※ 괄호 ()안의 수는 예비입주자 수)

구 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84A	84B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 유공자 등		6 (30)	2 (10)	8 (40)
	장기복무 제대군인		3 (15)	1 (5)	4 (2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5)	-	1 (5)
	장애인	경상남도	4 (20)	1 (5)	5 (25)
		부산광역시	3 (15)	1 (5)	4 (20)
		울산광역시	3 (15)	1 (5)	4 (20)
	중소기업근로자		8 (40)	2 (10)	10 (50)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 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예비자 추첨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 일정안내(예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6.06.19.(금)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www.신문대상라시엘.com)
견본주택 오픈	2026.06.19.(금)	* 견본주택 위치 : 김해시 신문동 781-1번지 ※오픈 및 관람사항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접수 (인터넷청약 원칙)	2026.06.29.(월)	* 인터넷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09:00~17:3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함. * 견본주택 신청 시(10:00~13:00), 자격입증 서류 지참 필수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26.07.07.(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 위 일정은 분양승인 과정 중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에 한하여 사업주체 지정 장소 방문접수가 허용됩니다.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자격 입증 서류 지참_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Ⅱ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 안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등에 의거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자저축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함.(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 이주주택대상자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입주자저축 신청자격(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 이주주택대상자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구분	신청자격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 예치기준금액 〉

구분	김해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부산광역시 및 특별시	울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전혼자녀 등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이 아닌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제8의2,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3.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내에 있는 자
4.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 이주주택대상자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19.(금)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해당기관에서는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사항은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당첨자 선정 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청약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 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생 애최초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미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Ⅳ 유의사항

- 각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항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사업주체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당첨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역을 기반으로 정당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불일치할 경우 소명 등 일반공급 처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 청약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외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안내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입주자모집공고 시 확정되는 내용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분양문의 및 위치

■ 홈페이지 주소 : www.신문대상라시엘.com

■ 대표번호 : 1600-2380



사업지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087번지 일원

견본주택 : 김해시 신문동 781-1번지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도로, 학교 등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